

1회용품 사용규제, 위생교육, 빵의 영양 표시

올해부터 달라진 식품 관련 법! 법! 법!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4년이 시작되자마자 각 제과점마다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던 봉투를 50원씩, 100원씩 돈을 받으면서 고객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1회용품 파파라치'에 의해 신고당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올해부터 바뀐 대표적인 식품 관련 법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두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글 · 김미선 기자

1회용품 사용 규제 대폭 강화

지난 해 9월 환경부는 2004년 1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느슨하게 관리해 오던 1회용품 사용을 '파파라치'를 동원해 보다 확실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음식점·목욕탕·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주민이 신고하면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 주로 한정된 기간 내에만 규제를 실시했던 예전에 비해 해당 업주들로서는 적발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커졌다.

게다가 지난 해 7월부터 1회용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규제의 영역이 즉석판매 및 제조가공업소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등의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 강화되는 바람에 현재 원도우베이커리 업종 구분에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 제과업계 또한 1회용품 규제에서 빗겨갈 수 없게 됐다.

환경부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군·구 등 각 지방단체별로 신고포상금제를 속속 시행하기 시작한 가운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규제 절차를 1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등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했을 때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리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신고를 받은 지역의 각종 제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 Check Point 1회용품 사용규제

하나 1회용품 사용 적용 대상 및 과태료

업종	과태료 (단위: 원)	적용 대상 1회용품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10만~1백만	- 1회용 컵, 접시, 수저, 포크, 나이프(종이·합성수지·금속박)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10평 이상 판매점	3백만	- 비닐코팅 광고지 제작·배포 - 1회용 봉투·쇼핑백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만~1백만	- 비닐코팅 광고지 제작·배포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

둘 세부 사항

- 1회용 봉투, 쇼핑백은 돈을 받고 판매한 다음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환불한다.
- 2회용 도시락 용기는 PVC뿐만 아니라 OPS, PET 등 모든 종류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 3도시락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직접 가져갈 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물 혹은 국물류를 담기 위한 경우에만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을 허용한다.
- 4 각 자치단체별로 도·소매업소에서 소형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신고포상금제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셋 과태료 절차

1차적발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차적발시 1차 이상의 과태료 부과

주의 각 자치단체별로 세부 사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전국에 '1회용품 파파라치' 경계령

지난 해 9월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과점, 음식점, 백화점 등의 위반 업소를 신고한 주민은 과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러한 제도의 하점을 노리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전문적으로 나선 이들까지 나타났다. '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꾼들로 이미 교통, 쓰레기 투기 등에서 활약(?)이 컸던 '파파라치'의 마구잡이식 신고가 이어졌다.

지난 2월 28일부터 포상금제를 실시한 대구 남구청은 실시한 지 열흘 만에 모두 31건의 위반사례가 접수됐는데 3명이 집중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청의 경우 5명의 주민이 43건의 위반

사례를 신고해 300만에 달하는 예산을 싹쓸이하는 통에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 포상금 확보가 쉽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신고꾼들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포상금을 휩쓸어 가는 바람에 일선 자치단체에서 허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당 포상금 최고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두 사람 이상이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정·부당하다 판단되는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커피 등 음료를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1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도·소매업소에서 소형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 등은 주민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 Plus+ 정보

종이만이 살길이다!

제과점들은 샌드위치용 합성수지 포장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금속박 접시도 사용할 수 없다. 제과용 포장업체들은 규제 대상이 제과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로 확대된 지난 해 7월부터 새로운 소재의 포장재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업체마다 당장 급한 샌드위치 포장재부터 식약청 기준에 맞춘 식품용 종지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1회용품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단 종이의 경우 합성수지에 비해 단가가 10~15%나 높고 인쇄비 등의 제작비용을 고려했을 때 포장재 가격의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종이 포장재의 경우 제품의 내용물 확인이 어려워 고객들에게 신선했을 강조할 수 없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포장 업체

들은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제품이 보일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생분해성 합성수지이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의해 고시한 규격 기준에 맞춘 것이어서 규제에 해당되지도 않고, 기존 합성수지 제품과 투명도나 품질에서 차이가 없어 종이 포장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비용은 물론 제품 단가도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가뜰이나 어려운 제과업체에 '포장비용 상승'이라는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제과점 영업주 위생교육 부활

5년 전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 결정이 있는 이후 위생교육은 새로 제과점을 오픈하려는 영업주만 받으면 됐다.

2004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영업주는 매년 4시간씩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 관련 영업자의 위생의식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부활한다”고 새로운 법의 시행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1만 7천 여 제과점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

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대한제과협회는 4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을 마칠 계획이어서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생교육은 모든 식품 영업장에 대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면 당연히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일주일 또는 보름씩 지속되는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교육날짜를 꼼꼼히 체크해 참가해야 한다.

제과점을 새로 오픈하기 위해 받아야 할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다.

■ Check Point 부활된 위생교육

하나 위생교육 개요

교육 대상: 제과점 영업자

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의무교육

교육 장소

- 서울 - 16개 서울시지회가 관할 구역별로 시행
- 광역시 - 광역시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하거나 각 구별로 분할 교육 시행
- 그 외 지역
 - 각 도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하거나 각 시별로 분할 교육 시행

교육 내용

- 식품위생법의 해설과 운용
- 식품의 기준과 규격, 식품의 위생적 제조·저장·판매 식품위생 시책에 관한 사항
- 식품 행정지도, 식중독 예방 사항, 개인위생과 작업 환경 제품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 사항

둘 세부사항

- 1 위생교육통지서는 (사)대한제과협회 해당 지회·지부에서 교육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2 교육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해 명단을 확인하고 사전 안내를 받는다.
- 3 위생교육이 끝난 후 (사)대한제과협회가 현장에서 발행하는 교육확인필증을 반드시 받는다.
- 4 위생교육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교육유예신청서’를 해당 지회지부에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셋 행정처분 일반 절차

1차 교육 불참 - 시정명령

2차 교육 불참 - 영업정지 7일

3차 교육 불참 - 영업정지 15일

주의

해당 지회·지부는 교육대상자의 인원수에 따라 위생교육을 연 1~2회만 실시한다.
2회 이상 불참해 영업정지 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교육일정에 맞는 다른 지역의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Plus+ 정보

교육 면제 대상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섬이나 벽지에 있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제과점 영업주는 위생교육 교재를 숙지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위생관리 책임자 선정

영업신고서 상의 영업주이지만 영업활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점포를 경영하는 영업주는 종업원을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사)대한제과협회 지회·지부의 해당 교육장에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뜻한 바대로 권한을 이임할 수 있다.

교육 일자를 연기하려면?

교육대상자가 아래의 다섯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교육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 ①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움직이기 곤란할 때
 - ②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결혼, 회갑 또는 사망했을 때
 - ③법원에 출석해 증언 또는 재판을 받아야 할 때
 - ④업무와 관련해 해외 여행중일 때
 - ⑤기타 허가관청에서 인정하는 이유가 있을 때
- 미리 (사)대한제과협회 지회지부에서 교육유예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빵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 레토르트 식품, 라면과 함께 ‘빵’이 있어 업계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법령은 자영 제과점에서 제조·판매되는 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해 식약청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죽, 카레, 국, 짜장 등의 레토르트 식품과 라면, 빵 등에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등 영양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법으로 정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23일이 되면 의무적으로 영양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표시대상으로 정하는 대상은 식품제

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나 점포가 생산하는 식품이다. 자영제과점의 업종은 현재 식품접객업 안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청 영양평가과의 관계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면 영업 신고서에 표기된 영업 종류를 확인하면 된다”면서 “일반 제과점은 휴게음식점으로 업종 분류돼 있기 때문에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식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어서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빵’에 대해서도 표시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지 식약청의 행보가 주목된다.

■ Plus+ 정보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중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나.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 ㉞